

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남창진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31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10월 13일

발 의 자: 남창진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동욱, 김영철, 김지향,
김춘곤, 김태수, 신복자,
옥재은, 유만희, 이희원,
채수지, 최민규, 한·신,
허·훈, 홍국표, 황철규
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
- 2016년 6월 국가건설기준 내용 체계 전면 개편으로 국토교통부 건설기준 코드가 통합 제정되었고, 2018년 5월 서울특별시 상위기준 코드화로 인해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가 전면 개정되었음.
- 개정된 국토교통부 지침 및 서울시 전문시방서 규정과 관련된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조문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 정합성과 완결성을 높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중 참고하는 서울시 기준은 ‘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공통편(SMCS 118500 굴착 및 복구공사)’으로 한다. (안 별표3제2호)
- 나.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중 참고하는 국토교통부 기준은 ‘도로포장 통합지침’으로 한다. (안 별표3제8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도로법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1] 2. 중 “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37조(건설기술용역대가)의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(전면 책임감리비 요율)”을 “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(기획재정부)의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”로 한다.

[별표 3] 2. 중 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(토목편) 4-8 굴착 및 복구공사”를 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공통편(SMCS 118500 굴착 및 복구공사)”로 한다.

[별표 3] 8. 중 “도로포장설계·시공지침(국토교통부)”을 “도로포장 통합지침(국토교통부)”로 하고, 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(토목편)”을 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(공통공사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별표 1>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 적기술기 및 복구비용산출방법(제 3조제3항 관련)</p> <p>2. 최소굴착면적, 최소굴착폭, 간접 손케영향구간 및 복구비용 표. (생 략)</p> <p>※ 「<u>건설기술진흥법</u>」 제37조(건설 기술용역대가)의 <u>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(전면 책임감리비 요율)</u>에 따른 요율 범위 내에서 정한다.</p> <p>3.~4. (생 략)</p> <p>[별표 3]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(조례 제3조제3항 관련)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(생 략) ※ “<u>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(토목편) 4-8 굴착 및 복구공사</u>” 참고</p> <p>3.~7. (생 략)</p> <p>8.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, <u>도로포장설계·시공지침(국토교통부)</u>, 「<u>서울특별시 도로굴착·복구업무 처리규칙</u>», <u>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(토목편)</u>, <u>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</u>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.</p>	<p><별표 1>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 적기술기 및 복구비용산출방법(제 3조제3항 관련)</p> <p>2. 최소굴착면적, 최소굴착폭, 간접 손케영향구간 및 복구비용 표. (생 략)</p> <p>※ <u>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(기획재정부)의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</u>에 따른 요율 범위 내에서 정한다.</p> <p>3.~4. (생 략)</p> <p>[별표 3]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(조례 제3조제3항 관련)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(생 략) ※ “<u>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공통편(SMCS 118500 굴착 및 복구공사)</u>” 참고</p> <p>3.~7. (생 략)</p> <p>8.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, <u>도로포장 통합지침(국토교통부)</u>, 「<u>서울특별시 도로굴착·복구업무 처리규칙</u>», <u>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(공통공사)</u>, <u>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</u>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.</p>

문서번호

2023100700000002

비대상사유서

요청인 : 남창진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
이정수 팀장
김지혜 주무관

접수일 : 2023.10.07.

회신일 : 2023.10.10.

내용문의 : 02-2180-7953

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

목 차

1. 판단 근거
2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
재정분석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3 제2호 중 “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중 참고하는 서울시 기준은 ‘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공통편(SMCS 118500 굴착 및 복구공사)’ 으로 한다” 로 하고, 별표3 제8호 “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중 참고하는 국토교통부 기준은 ‘도로포장 통합지침’ 으로 한다” 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주 무 관	김지혜
	☎ 02-2180-7953
	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.